# 국가유산기본법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21 발의연월일: 2022. 9. 23.

발 의 자:배현진·김성원·서일준

이용호 · 이철규 · 임병헌

정점식 · 정희용 · 조명희

최형두 • 황보승희 의원

(11인)

# 제안이유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 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또

한, 각 유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본원칙의 정립,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존·관리체계의 구축, 전사회적 공감대와 공동체 참여확대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은 우리겨레와 민족의 삶과 영감의 원천으로서, 과거 세대로부터 이어받아 현재 세대가 영위하며 미래 세대로 물려주어야하는 유산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함(안 제2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며, 국가유산 관련 공동체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야 함(안 제12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안 제22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과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특별히 배려하여야함(안 제23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 용·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하여야 함 (안 제24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 출을 위해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안 제27조).
- 자.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3 1조).
- 차. 국가유산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 (안 제3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 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 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 국가유산기본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유산"이란 우리 겨레와 민족의 삶과 영감의 원천으로서, 과 거 세대로부터 이어받아 현재 세대가 영위하며 미래 세대로 물려 주어야 하는 유산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 •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 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음 세대에 더욱 값지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 ② 국가유산 정책은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한다.
  - ③ 국가유산 정책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 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 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 제7조(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 여야 한다.
  - 1.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 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 유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유형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유형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국가유산의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관리, 수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지역의 통합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장 국가유산 보존 • 관리

-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관 리 및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관리 및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목록 작성 등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국가유산 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한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시행하여야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이를 지시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수리시 전통적 재료와 기법

- 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 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 제20조(자격 관리)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득하여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 격을 검증·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 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재난에의 예방 및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체계적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22조(기후변화에의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

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4장 국가유산 활용 · 진흥

- 제23조(국가유산 복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전시·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향 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제24조(국가유산 지능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운영 등 국가유산 정보관리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25조(국가유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유산의 올바른 교육 제공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인증제도 등을 실시·운영할 수 있다.
- 제26조(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분야 협력 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국가유산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①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유산(이하 "외국유산"라 한다)은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

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 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 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문화재청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 제32조(한국유산재단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활용 및 전통생활 문화의 창조적 계발과 확산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유산재 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다.
  - 1. 공연 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 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 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사무는 한국유 산재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유산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은 한국유산재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한국유산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유산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 국유산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로 한다.

-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 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 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 ③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 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 32조"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⑧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⑨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을 "「국가유산기 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으로 한다.

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2 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 2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⑪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하고, "문화재·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전통사찰"으로 한다.

(B)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 로 하고,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로 한다.

20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로 한다.

②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

산"으로 한다.

②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